

『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우리시에서 제정 적용하고 있는 “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” 조문중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건설 기계의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한자 ⇒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완화(안 제7조제1항)
- 운전일지의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⇒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완화(안 제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2003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사항
-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함에 있어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조문중 지금까지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한자 ⇒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완화하고

- 운전일지의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는다
⇒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3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하였듯이 대여자의 편의도모와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